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정옥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 제18조의 경우 「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함에 따라 「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개정 추진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「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개정 추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의 관련 조항을 함께 개정함(안 제18조제1항·제3항·제5항)

- 1) “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”를 “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발굴·수집 및 관리”로 함
- 2) 「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일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의 준용 규정에 신설 조항을 포함함
- 3) “인사상의 목적”을 “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·기술·경험 등의 활용(이하 “인사상 목적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)”를 “(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발굴·수집 및 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수집·관리하기”를 “발굴·수집 및 관리하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집·관리하는”을 “발굴·수집 및 관리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「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2항·제3항”을 “「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2항·제3항·제4항”으로, “제9조제2항”을 “제9조제2항·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“인사상의 목적””을 ““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·기술·경험 등의 활용(이하 “인사상 목적등”이라 한다)”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(이하 “여성인재”라 한다)에 관한 정보를 수집·관리하기 위하여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	제18조(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발굴·수집 및 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발굴·수집 및 관리하기 ----- ----- 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집·관리하는 여성인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정한다.	③ ----- --- 발굴·수집 및 관리하는 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, 정보 수집의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·보호 등에 관하여는 「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2항·제3항, 제5조제3항, 제6조부터 제8조까지, 제9조제2항, 제10	⑤ ----- ----- ----- ----- 「공직후 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2항 · 제3항· 제4항----- ----- 제9조제2항· 제3

조,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인사혁신처장”과 “인사혁신처장(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)”은 각각 “여성가족부장관”으로, “공직후보자”와 “공직후보자등”은 각각 “여성인재”로, “ <u>인사상의 목적</u> ”은 “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”으로 본다.	<u>항-----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“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·기술·경험 등의 활용(이하 “<u>인사상 목적등</u>”이라 한다)”-----</u>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149